

#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337
----------	-----

제출연월일 : 2005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 아동의 보호를 위해 복권기금으로 매입한 충청북도아동보호종합센터와
- 동계체전 충북 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도비를 지원하여 건립된 용평전지훈련관의 소유권을 확보,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충북개발공사의 경영을 지원하고자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주식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 지방재정법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 재산의 취득

#### 《 충청북도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 》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09번지
- 재산규모
  - 토지 : 323.40㎡( 97평)
  - 건물 : 연면적 1,196.73㎡(362평)
- ※ (사)굿네이버스에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재산기부
- 사업기간 : 2005. 하반기
- 재산가액 : 928,718천원(토지 200,508 건물 728,210)

《 용평전지훈련관 기부채납 》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618번지 등 3필지

○ 재산규모

- 토 지 : 3필지 991.00m<sup>2</sup>(300평)

· 강원 평창 도암 용산 617-6 전 93m<sup>2</sup>

· 강원 평창 도암 용산 617-7 전 26m<sup>2</sup>

· 강원 평창 도암 용산 618 대지 872m<sup>2</sup>

- 건 물 : 연면적 531.43m<sup>2</sup>(160평) 철근콘크리트(1/2층)

※ 황상기(토지) 및 충청북도체육회(건물)가 동계체전 충북대표선수 전지훈련시설로 재산기부

○ 사업기간 : 2005. 하반기

○ 재산가액 : 649,338천원(토지 23,388 건물 626,000)

□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공유재산 현물 출자 》

○ 출자재산 : 토지 151필지 167,651.00m<sup>2</sup> 33,498,172천원

구 분	필지수	면 적 (m <sup>2</sup> )	재산가액 (천 원)	비 고
계	151	167,651.96	33,498,172	
밀레니엄타운 부지	47	100,926.00	14,843,763	
가경·중평지구 연부용지	95	48,634.06	12,153,680	
부용산업단지 및 미분양택지	9	18,091.90	6,500,729	

※ 필지별 세부내역 : 따로 붙임

- 출자시기 : 가칭 『충북개발공사』 설립 등기 이전까지

- 재산취득 : 주식 6,696,634주(주당 5,000원) 33,498,172천원 상당

- 출자방법 : 출자재산 처분 및 주식 취득 동시 이행

3. 예산상황 : 비예산 사업

(단위 : 건)

사 업 명	재산취득	재산처분	출자취득	출자처분	비 고
계	2		1	1	
○ 충청북도 아동보호 종합센터 기부채납	1				비 예산
○ 용 평 전 지 훈 련 관 기부채납	1				"
○ 공유재산 현물출자			1	1	"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 관리계획 반영재산 세부내역

가. 공유재산 현물출자 대상재산

**5. 관계법령 : 별첨**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





## 2005년도 출자대상 재산목록 (7-3)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출 자 시 기	출자(취득) 사유 및 법적근거	출자처분 출자취득 대상법인	비 고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취득							
		처분	1 건	167,651.9㎡ (50,714평)	33,498,172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1 건	6,696,634주	33,498,172				
		처분							
	1	토지	취득						
			처분	청주 상당 사천 90-1 등 151필지	167,651.9㎡ (50,714평)	33,498,172	2005	도 출자기관의원 사업추진 지원 (지방재정법 제83조)	가칭“충북 개발공사“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6,696,634주	33,498,172	2005	현물출자 관련 권리취득	가칭“충북 개발공사“	
		처분							
2		토지	취득						
			처분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 방 재 정 법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p>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8조(공유재산심의회)①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p> <p>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기부채납,무상양수,환지,무상귀속,교환,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출자,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양여,교환,무상귀속,건물의 멸실,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이 경우 예정 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상)</p>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①조례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13호서식)</li> <li>2 ~ 5호 생략</li> </ol>